

공무원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길라잡이
- 알아야 할 지식 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머 리 말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장애인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현실은 ‘장애인 인권교육’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 ‘장애 체험 교육’ 등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정작 ‘장애인 인권교육’이 어떤 교육을 말하는지 개념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위해 부족하지만 하나의 시도로 제작되었다. 이번 내용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엮은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 결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다르지 않으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겪는 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알아가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등한 이웃임을 인정해가는 과정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교재는 이런 인식 아래 ‘장애인 인권교육’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색하고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장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인권교육을 하는 활동가들과 인권교육을 수강하는 대상 모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첫 시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교재가 ‘장애인 인권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길 기대한다.

Chapter 2. 장애와 장애유형의 이해

■ 교육목적

- 장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장애유형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 장애문제의 패러다임이 개인에서 사회로 바뀌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목표

- 장애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장애의 개념적 모델을 이해하고 장애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다.
- 장애 관련 법률상의 정의와 장애유형을 배울 수 있다.

■ 단원요약

- 장애는 치료가능성이 존재하는 질병과는 다르며, 의학, 법률 등 분야마다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
- 장애의 개념적 모델은 장애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개념적으로 설명했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UN 장애인의 권리 선언”과 “WHO의 국제장애분류”이며, 장애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관

1 장애의 개념

- 가. 의학적 정의 :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정신의 구조, 기능 등을 해부학적 손상이나 결함으로 설명
- 나. 사회적 정의 :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의미함. (천시나 멸시, 동정과 시혜,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 등은 사회적 시각이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다. 법적 정의 : 한 사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장애를 의미함(나라마다 관련법에 따라 서로 다름)
- 라. 국제적 정의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사람 - UN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

※ 장애의 개념구분과 의미 : '질병'과 '장애'의 구분

- 질병(disease), 상해(injury) :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 예방과 치료 우선
- 장애(disability) : 신체·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
 - ☞ 일상 지원 우선

| 구 분 | | 의 미 |
|-----|----------------------|-------------------------|
| 질병 | 질병(disorder/disease) | 특정 부위(구조)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
| 장애 | 기능장애(impairment) | 특정 부위의 기능의 제한 |
| | 능력장애(disability) |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능력 제한 |
| | 사회적 불리(handicap) | 사회적 기능의 제한 |

Duckworth, D.,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Disablement, HMSO, 1983

2 장애의 개념적 모델

- 장애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개념적으로 설명

- 장애의 개념적 모델은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

- 개별모델 : 장애문제 = 개인적 비극/사회적 모델 : 장애문제 = 사회적 억압

- 따라서 같은 장애라도 시대, 사회 환경, 관점에 따라 장애로 간주되기도 안 되기도 함

예) 미국과 호주는 AIDS를 장애로 인정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알코올중독 중 일부를 장애로 인정하지만 영국은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은 장애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개별적 모델(the individual model) |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 |
|--------------------------------------|---|
| 개인적비극이론 (personal tragedy theory) | 사회적억압이론 (social oppression theory) |
| 개인적 문제(personal problem) | 사회적문제(social problem) |
| 개별적 치료(individual treatment) | 사회적행동(social action) |
| 의료화(medicalisation) | 자조(self-help) |
|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dominance) | 개별적, 집합적 책임(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
| 숙련가(expertise) | 경험(experience) |
| 개별적 정체성(individual identity) | 집합적정체성(collective identity) |
| 편견(prejudice) | 차별(discrimination) |
| 태도(attitudes) | 행위(behaviour) |
| 보호(care) | 권리(rights) |
| 통제(control) | 선택(choice) |
| 정책(policy) | 정치(politics) |
| 개별적 대응(individual adaptation) | 사회변화(social changes) |

장애의 개념적 모델 비교 Oliver. M,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1996

3 국제장애분류

-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장애의 개념을 말하며, 2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ICF로 정의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전 인구의 10% 이상이 장애를 가진 인구로 추정

1)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1980

: 장애의 정의는 외부환경조건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함

- ✓ 첫째, 의학적 측면에서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 또는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의 장애(Impairment)
- ✓ 둘째,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 또는 범위에서 활동을 하는 능력의 제한 또는 결여능력저하의 장애(Disability)
- ✓ 셋째, 개인에게 연령, 성, 사회, 문화적인 여러 요인으로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신체적 손상 및 능력저하로 인한 정상적 사회 참여 및 생활상의 총체적 장애(Handicap)

| 개 념 | 의 의 | 차 원 |
|----------------------------|--|--------|
| 건강조건 (health condition) | 병리학적인 변화로서 증상이 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이 발생했다. | 개인적 차원 |
| 손 상 (impairment) | 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하였다. | 개인적 차원 |
| 장 애 (disabilities) | 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 | 개인적 차원 |
| 사회적 불리 (handicaps) | 개인의 활동 능력 제한에 대해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 사회적 차원 |

WHO(1980).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이후 1997년 WHO는 ICIDH-2를 통해 순수하게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상인 ① 손상과,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및 원조 등을 포함하는 ② 활동, 사회적 반응까지 포함하는 ③ 참여의 측면에서 장애의 개념을 설명하여 개인적 비극보다는 사회적 문제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2)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장애 개념의 변화 : 신체적 장애 →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ility)
- 장애인의 개념 변화 :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 →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 : 특수한 문제 → 건강의 축에서 바라보는 보편적인 문제로 전환

※ 이에 따라 ICF는 ICIDH와는 달리 장애의 독립적인 정의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 참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 의해 장애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

※ ICF는 두 개의 부분과 네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 부분1 : 긍정적 측면에서의 기능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장애를 포괄하는 요소로 구성
- 부분2 :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문맥적 요소들로 구성

※ ICF는 사회 정책이나 제도 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지표를 제시하고 개인의 신체기능, 활동과 참여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분류기준과 아울러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장애의 개념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짜여짐

| 구분 | 부분1 : 기능과 장애 | | 부분2 : 배경 요인 | |
|-------|--------------------------------|--|----------------------------------|-------------------------|
| | 신체기능과 구조 | 활동과 참여 | 환경적 요인 | 개인적 요인 |
| 영역 | 신체기능 신체구조 | 생활영역 (임무, 일상행위) |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력들 |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영향력들 |
| 구성 | 신체기능의 변화(생리학) 신체구조의 변화(해부학) | 능력 : 표준 환경 안에서 임무수행 수행 : 실제 환경 안에서 임무수행 |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효과 | 개별 특성에 미치는 효과 |
| 구성적측면 | 기능적, 구조적으로 완전함 | 활동과 참여 | 촉진요소들 | 적용 못함 |
| | 기능 | | | |
| 부정적측면 | 신체/기능의 손상 | 활동의 제한 참여의 제약 | 방해/저해요인들 | 적용 못함 |
| | 장애 | | | |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개요

※ 즉 ICF는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

※ ICF로의 장애 개념 변화가 갖는 주된 의미

- ✓ 첫째,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에 대한 강조

- ✓ 둘째,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이 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전환
- ✓ 셋째,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환경적 요인들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
- ✓ 넷째, 장애 개념 규정에서 긍정적인 용어사용을 강조



우리나라의 장애법주와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를 규정(제2조 1항)하고 시행령을 통해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분류(시행령 별표1)
- 1989년 제정 당시 신체, 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 → 신장, 심장, 간질 환 등 내부기관 장애와 중증 간질장애, 안면변형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

m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확대에상 장애범주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 | | 뇌병변 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 내부 기관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자 | |
| | | 간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간기능 이상 | |
| | | 호흡기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호흡기기능 이상 | |
| | | 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각종중독, 치매 정신발달 장애 | |
| | 정신장애 |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 | |
|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 | |

현행 법률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장애의 정의와 종류

- 장애인복지법과 다른 법률 간의 장애유형 및 등급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취지와 소관부처 등이 다르기 때문

| 법률명 | 장애 관련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등급 1~6급, 15개 장애유형 분류 |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장애 등 규정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과 동일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
| 국민연금법 | - 장애등급 : 1~4급 - 장애유형 : 시각, 지체, 언어, 청각, 정신, 신경, 저작기능, 척추변형 장애 등, '노동 불능상태' 포함 |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 신체장애(1~14급) : 시각, 언어, 저작기능, 신경, 정신, 흉복부장기 기능, 지체, 외모추상, 생식기, 신장 또는 비장, 치과보철 장애 등 - 폐질급(1~3급) : 시각, 언어, 저작기능, 정신, 신경, 흉복부장기 기능, 지체 장애 등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후유장애등급(1~14급): 시각, 언어, 저작기능, 정신, 흉복부장기 기능, 지체, 외모추상, 생식기, 신장, 비장, 치과보철, 청각 장애 등 |
| 근로기준법 | 신체장애등급(1~14급): 시각, 언어기능, 저작기능, 정신, 흉복부기능, 지체, 외모추상, 생식기 기능, 신경기능, 치과보철 장애 등 |
| 공무원연금법 | 폐질등급(1~14급): 시각, 언어, 저작기능, 코기능, 청각, 정신, 흉복부장기 기능, 지체, 외모추상, 생식기, 신장, 비장, 치과보철, 청각 장애 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이등급(1~6급) 시각, 언어장애, 저작기능, 정신, 취각 또는 호흡, 방광 기능, 흉복부장기 기능, 지체, 외모추상 및 변형, 생식기, 신장, 비장, 청각 장애 등 |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 폐질등급(1~14급) 시각, 언어, 저작기능, 코기능, 청각, 정신, 흉복부장기 기능, 지체, 외모추상, 생식기, 신장, 비장, 치과보철, 청각, 척추기형 장애 등 |
| 군인연금법 | 폐질등급(1~3급) 시각, 언어, 저작기능, 청각, 정신병, 빈혈 및 영양부족 등으로 인한 무력상태, 지체, 생식기, 급성질환, 신경증, 심장병, 후두적출, 완전마비, 전신쇠약, 신장 또는 방광결핵 등 |



장애유형의 이해

가. 지체장애

지체장애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상·하지, 척추, 전신 등에 절단, 마비, 관절장애, 기형 및 변형 등이 있어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불편이 있는 것”, 또는 “원인에 관계없이 상지, 하지, 체간에 일부 또는 전신의 운동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지체장애관련 용어로는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형 등이 있음.

나.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함. 뇌병변장애의 특성은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어 마비와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행성, 비유전성의 특징이 있음.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에서부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뇌병변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장애범주로서 추가하였음.

다.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보는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음.

라.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됨.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적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함.

마.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로 받아 사회 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함.

-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함.
- 음성장애(voice disorder) :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함.
- 유창성장애 :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됨.
- 기타 : 뇌성마비·지적장애·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음.

Chapter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교육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다.

■ 학습목표

- 장애인 차별과 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인지한다.
- 담당 업무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사항을 인지한다.

■ 단원요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 11일 제정된 법률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차별행위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행위의 형태에 따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비용상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으로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은 △장애인,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 관련자),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가 정당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의의

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상향식 입법과정을 거쳐 얻어낸 민주적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작부터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통해 외국의 법제도를 도입하면, 장애인들이 의견만 제시하던 수준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입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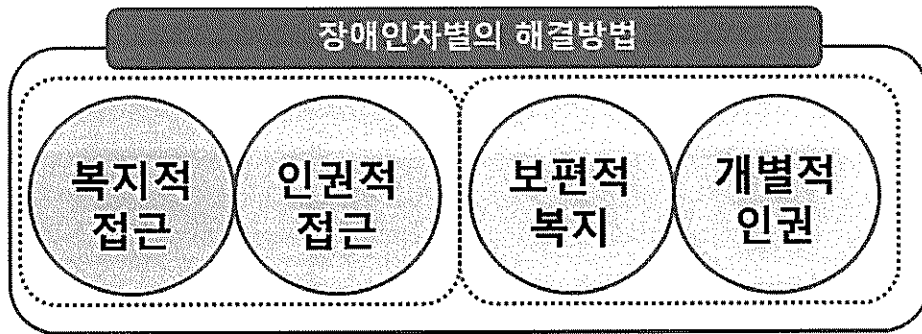
나. 범장애계를 넘어 범사회가 연대한 진정한 연대 운동의 결실

전국의 247개 장애인단체 및 사회단체가 연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제정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03년 4월에 결성되어 2007년 3월 6일 법안 제정이 확정(2008년 4월 11일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하거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접근 방식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복지의 확대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차별해소를 꾀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장애인 정책이나 지원 등이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이 장애인 개인의 인권보장과 함께 사회가 보장하는 복지수준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누릴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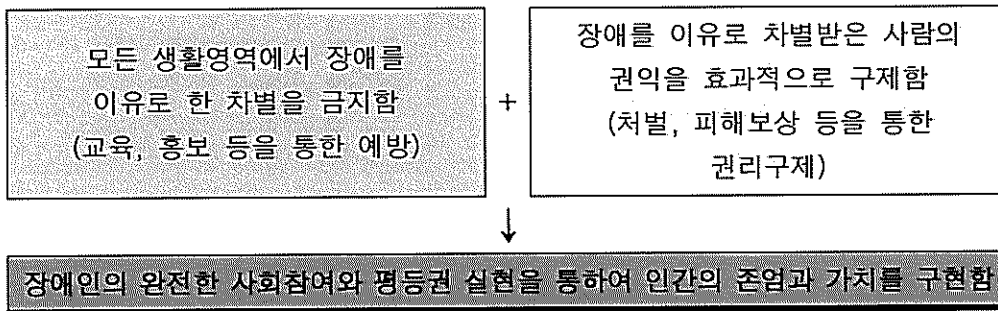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제6장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규정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 규정명칭 | 주요내용(괄호는 조항) |
|-----|--------|--|
| 제1장 | 총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목적(1조)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2조) ■ 용어정의(3조) ■ 차별행위에 대한 기준(4조) ■ 차별판단 및 차별금지(5조, 6조)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9조) |
| 제2장 | 차별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1절, 10조~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의 내용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10,11조) - 의학적 검사의 금지(12조) ■ 교육(2절, 13조~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의 내용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13,14조)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3절, 15조~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16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17조) - 시설물 접근 및 이용(18조), 이동 및 교통수단(19조) - 정보접근(20조),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21조) - 개인정보보호(22조) - 문화·예술활동(24조), 체육활동(25조)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4절, 26조~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26조), 참정권(27조) ■ 모부성권, 성 등(5절, 28조~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성권(28조), 성(29조)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30조~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가정복지시설(30조), 건강권(31조), 괴롭힘(32조) |
| 제3장 | 장애여성 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33, 34조)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35, 36조) |

| | | |
|-----|-----------------------------|--|
| | 장애아동 |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37조) |
| 제4장 |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 및 권리구제 | ■권리구제절차의 안내 - 진정(38조), 직권조사(39조), 권고(42조), 시정명령(43~45조) ■차별시정기구와 운영(40, 41조) |
| 제5장 | 손해배상, 입증책임 | ■손해배상(46조) 및 법원의 구제조치의 내용(48조) ■입증책임의 배분(47조) |
| 제6장 | 벌칙 | ■차별행위에 대한 양형기준과 근거(49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50조) |

가. 총칙(1조~9조)

1) 제정 목적(1조)



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2조)

장애에 관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구정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3) 차별행위에 대한 기준(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차별행위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행위의 형태에 따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에 비용상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가) 장애인차별행위의 유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함.

[직접차별의 예시]

-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장선생님
- 장애를 이유로 월세집 계약을 하지 않는 집주인
- "장애인은 매운 음식 못먹어요." 라고 하면서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장님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함.

[간접차별의 예시]

- 지적장애인에게 핸드폰을 팔면서 요금제, 약정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를 읽어보게 하는 대리점 직원
- 필기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점자(큰문자, 음성)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시간 안에 시험을 마칠 것을 강요하는 시험 감독관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함.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예시]

- 자기 학교에는 계단이 많아 도보가 힘들면 다니기 어렵다고 말하는 교장선생님
- 장애가 있는 민원인이 오면 담당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시정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를 준비해주지 않는 담당관
-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를 점자나 큰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체 사장님

■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함.

나) 장애인차별금지의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4) 차별판단 및 차별금지(5조, 6조)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차별로 보되,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5)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7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사회가 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함의하고 있음.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
-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나. 차별금지(10조~12조)

1) 고용(10조~12조)

-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고용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금지(10조)
 - 사용자: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 노동조합: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 거부,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

- 채용 이전 의학적 검사의 금지(12조)
 -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다만, 채용 이후에는 직무상의 요구 혹은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허용)
 - 채용 이후 의학적 검사를 위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
 - 채용 이후 의학적 검사 결과 얻어진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누설 금지

-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11조 및 시행령 5조)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함.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설치
 - *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의 인력 및 시설 마련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 장애 특성에 적합한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보조수단 제공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 대상 사업장 | 적용시점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9년 4월 11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1년 4월 11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3년 4월 11일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 고용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시정권고사례

■ 장애를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와 직무배치를 한 00군청(10진정0173300)

진정인의 부친인 피해자 A씨는 1987년 00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4년 4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주 2회 병가를 신청해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가며 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2008년 8월 00군청 행정지원과 계장 C씨는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기 시작했고,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2009년 2월 A씨를 장애를 이유로 업무부적격자로 선정,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더욱이 업무부적격자로 선정된 다른 사람들과 달리 A씨에게만 C씨는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은 채, 군청 4층에 있는 해양수산과 창고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하였다. A씨가 근무하던 공간에는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헌 책상과 의자, 컴퓨터와 전화기가 전부였다.

아내 B씨는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군수와 C씨의 배우자 등을 찾아가 시정을 요청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 해 10월 대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군수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전 행정지원과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관할 도지사에게는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군청을 포함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2) 교육(13조~14조)

■ 교육책임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금지(13조)

-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전학 강요 및 거부 금지
- 장애인 등의 동법 14조 1항 및 시행령 8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의 거절 금지
-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취업·진로교육 및 정보의 제공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욕 및 비하 금지
- 입학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추가서류, 별도 양식의 지원 서류의 요구 금지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면접 및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의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법정 학업시수 위반 금지

■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14조 및 시행령 8조)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함.

- 통학 및 교육기관 내의 이동 등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 보조건의 배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청각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및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 인력 배치
 -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모든 교육활동 공간에서 이동과 접근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 대상 사업장 | 적용시점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립 특수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 2009년 4월 11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보육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 어린이집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2조) | 2011년 4월 11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31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30조) ■ 상기 교육시설 이외의 평생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기관(연면적 1,000㎡ 이상)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연면적 2,500㎡ 이상) ■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수기관(2조)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3조) 및 전문교육훈련기관(4조) | 2013년 4월 11일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 교육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시정권고사례

■ **장애학생의 특수학급 설치요청 및 전학을 거부한 00학교(2007.3.28.자 06진차418결정)**

장애학생이 거주지 가까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학교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하고 관할 교육청에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 철저한 지도 감독을 권고했다.

■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학교(2007.6.22.자 06진차170 결정)**

청각장애인 A씨는 모 특수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하여 수업이수를 위해 수화통역사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학교측에 수화통역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이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장애 차별로 보고 학교측에 수화통역사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학교 (2008.12.자 08진차623, 08진차648 별합결정)**

인권위는 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응시한 뇌병변장애인 B씨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00대학교 대학원장과 전형위원회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 취소와 재심사를 권고했다.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 금지(15조-25조)

■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15조)

-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이 주어지거나,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해 이익창출 기회 박탈하는 것을 금지

※ 재화·용역 등의 제공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시정권고사례

■ 터치스크린 방식 현금입출금기(ATM)로 인해 ATM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20008.12.3자 08진차416·08진차486(병합)결정)

근래 영업시간 이후 입출금, 이체 등 간단한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만든 ATM이 누름 버튼 방식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바뀌어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ATM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은행 경영책임자에게 시각장애인이 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기기의 개선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16조)

-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의 과정에서 차별금지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시정권고사례

■ 장애인의 입주를 거부한 건물 관리자(10진정0351700)

지체장애 1급의 A씨는 사무실을 얻기 위해 B사 부동산 광고를 보고 “장애인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입주 문의를 했다. 이에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C씨는 “이곳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라서 장애인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입주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C씨에게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이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B사를 포함,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17조)

-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금지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시정권고사례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사(2007.12.14.자 07진차652 결정)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자의 장애 또는 과거의 진단력과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진정한 A씨의 보험청약을 재심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입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개선을 권고했다.

■ 청각장애인에게는 가족신용카드 발급 안한다(10진정0291000·10진정0360800(병합))

진정한 A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 B씨와 함께 사용할 C회사의 가족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C사는 “부인 B씨가 청각장애인이어서 내규상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가족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얼마 후, C사는 다시 “가족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확인절차상 가족 본인의 구두 확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C사 직원이 직접 B씨를 만나 가족신용카드 발급 의사를 확인해야 하면서 B씨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을 가족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확인 절차로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C사 대표이사에게, B씨의 의사에 따라 가족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하고,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도 권고했다.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18조)

- 시설물의 접근·이용, 비상대피 등에 있어 차별금지
-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반입·사용에 있어 차별금지
- 시설물의 접근·이용, 비상대피 등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 시설물 접근·이용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시정권고사례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제한(11 진정0371500 결정)

A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B시립도서관 본관 및 ○○도서관에 승강기가 없어 시청각실(지하층), 자료실, 학습실(2층 이상)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B시장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 아파트 거주 장애인에게 승강기 전기료 차등부과는 차별(11-진정-0555300 결정)

A아파트 관리주체인 B사는 '2층 거주세대에 한하여 다른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다른 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2층에 입주한 장애인인 C씨는 억울한 심정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승강기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 시설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바, 장애인이라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다른 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납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것은 장애인차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사에게, 향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19조, 시행령 13조)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차별금지
-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 금지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불리한 요금 적용 금지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차별행위를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해야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금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함
- *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